

2027

시설물안전법 주택관리사 등

эм북 자격증

공부혁명!
mbook.kr

- ★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★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종합
- ★ 최근 법령 신설, 개정 내용 반영
- ★ 1시간 2분 완성

도서명 : 시설물안전법

ISBN : 979-11-7393-356-1

발간일 : 2026-09-10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엠북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7,500원



시설물안전법

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
(이하 법)

[목차]

제1장 총칙(p5)

제2장 기본계획 등(p12)

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(p27)

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(p57)

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(p80)

제6장 삭제

제7장 보칙(p87)

제8장 벌칙(p102~111)

[약어]

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

부령은 국토교통부령

관계기관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

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

시군구는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

군수, 자치군의 구청장

전문기관들은 안전진단전문기관,

안전점검전문기관

1종은 제1종시설물

2종은 제2종시설물

3종은 제3종시설물

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초록색은 최근(1~2년내) 신설, 개정된 내용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1장 총칙

1~4조

1. 목적

- 시설물 안전점검, 적절한 유지관리
- 재해/재난 예방, 시설물 효율 증진
- 공중 안전 확보, 국민 복리증진에 기여

2. 정의

가. 시설물은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교량, 터널, 항만, 댐, 건축물 등 구조물과 부대시설

- 제1종시설물(이하 1종), 제2종시설물(이하 2종), 제3종시설물(이하 3종)

나. 관리주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시설물 소유자

1) 시설물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봄

2) 구분

- 공공관리주체는 국가/지자체, 공공기관,

지방공기업

- 민간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

다. 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해 시설물에 내재된 위험요인 조사

- 점검 목적/수준을 고려해 구분

1) 정기안전점검

- 시설물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

2) 정밀안전점검(이하 정밀점검)

- 시설물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

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

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 상태를 확인할 수
있는 수준의 외관조사와 측정/시험장비를
이용한 조사

라. 정밀안전진단(이하 정밀진단)은

- 시설물의 물리적/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
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하기 위해,
-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원인 등을
조사/측정/평가해,
- 보수/보강 등 방법 제시

마. 긴급안전점검(이하 긴급점검)은 시설물
붕괴/전도 등 인한 재난, 재해 발생 우려시

시설물의 물리적/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
발견하기 위해 실시

바. 내진성능평가는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
안전성 확보와 기능 유지를 위해 시설물별로
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
견디는 능력 평가

사. 도급은 원도급/하도급/위탁 등 명칭 불문,
안전점검, 정밀진단, 긴급점검, 유지관리,
성능평가(이하 안전점검등)를 완료하기로
약정하고, 상대방이 결과에 대해 대가를
지급하기로 한 계약

아. 하도급은 도급받은 안전점검등 용역
전부/일부를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3자와
체결하는 계약

자. 유지관리는 완공된 시설물 기능을
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
높이기 위해

-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/정비
- 손상된 부분 원상복구
- 시설물 개량/보수/보강

차. 성능평가는 시설물의 기능 유지를 위해
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, 내구성,
사용성 등 성능 종합 평가

카.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,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나 하자보수기간 등

3. 국가 등의 책무

가) 국가/지자체는 국민의 생명/신체, 재산 보호를 위해 시설물 안전, 유지관리 종합 시책 수립/시행

나) 관리주체는

- 매년 시설물 유지관리,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/자원 확보 노력
- 시설물 안전 확보, 지속적 이용을 위해

수시점검, 보수 등 상시관리 조치

다) 모든 국민은 국가, 지자체, 관리주체 수행
시설물 안전, 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

4. 다른 법률과의 관계

- 법은 시설물 안전, 유지관리에 관해 다른
법률에 우선해 적용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2장 기본계획 등

5~10조

1.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

기본계획(이하 기본계획)

가. 장관은

- 1) 5년마다 수립/시행 요
- 2) 수립시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(이하 중앙기관장)과 협의 요
 - 관계 중앙기관장, 지자체장에 자료 요구 가능
 - 기본계획 변경시도 같다
- 3) 수립/변경한 때 관보에 고시 요

나. 내용: 다음 포함요

- 1)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,
 - 기본목표, 추진방향
 - 정보체계 구축/운영

2)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체계 개발, 구축, 운영

3)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,

- 기술 연구/개발

- 인력 양성

4) 안전진단전문기관, 안전점검전문기관

육성/지원

5) 시설물 안전/유지관리 기준 작성/변경, 운영

2.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(이하 시설물관리계획)

가.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

시설물관리계획 수립/시행 요

나. 시군구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설물

- 3종 중 민간관리주체 소관 다음 시설물로서
시군구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
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

- 1)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아닌 공동주택
- 2) 노유자시설
- 3) 시군구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
있다고 장관이 정하는 시설물

다. 내용

- 1) 시설물의 적절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
조직/인원, 장비 확보